



I. 조사 개요

- 조사기간 : 2014. 1. 29. ~ 2014. 2. 26.
- 비리유형 : 금품수수

II. 조사결과 위법·부당내용

□ 비리행위자 : △△△

- △△△은 2010. ○. ○.부터 2012. ○. ○.까지 2년 3개월간 ○○처에 근무하면서 ○○지구 ■공구 감독업무를 담당하였음

□ 위법·부당내용 : 현금수수 및 도급사 명의 법인카드 사용

- ○○ 택지개발사업은 2008. ○.○. 도급사 □□건설과 ○○백만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진행중에 있었음
- ○급 △△△은 2010. ○. ○. ○○개발사업 ■공구 감독과장으로 발령받아 2012. ○. ○.까지 근무하면서 ○○지구 ■공구 공사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음.
- 취업규정 및 임직원행동강령규정에 따라 공사 임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등을 받아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△△△은 ○○지구 ■공구 감독과장 근무기간중 도급사인 □□건설 현장소장으로부터 3차례 걸쳐 각 50만원씩 총 150만원의 현금을 받은 사실이 있음
- 3회에 걸쳐 받은 현금을 현장직원 명절 차비 명목으로 10만원,

사무실 청소 아줌마에게 5만원을 주고, 나머지 금액은 ■공구 근무 직원들과 몇 차례에 걸쳐 회식비로 사용하였음

- 또한, ●●시 광역상수도 적수 발생 오염사고 문제 등으로 인하여 관련기관 식사 접대시 현장소장이 평소 음주를 못할 뿐만 아니라 현장을 자주 비워 식사접대에 참석이 어렵다는 사유로 □□건설 명의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있음

⇒사용횟수는 10차례 미만, 사용금액은 50만원 미만

□ 관련 규정

○ 위반규정

- 취업규정 제10조(증여, 향응, 금전차용금지)
- 임직원행동강령규정 제8조(부당이익 수수금지)
- 임직원행동강령규정시행세칙 제15조(금품 등의 수수 제한)

○ 징계 및 처벌규정

- 인사규정 제43조(징계)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56조(징계양정기준)
- 임직원행동강령규정시행세칙 제36조(징계)

○ 위반 및 처벌규정 세부내용

우리공사 취업규정 제10조(증여, 향응, 금전차용금지) 및 임직원행동강령규정 제8조(부당이익 수수금지)에 따르면 “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·향응 등을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 받아서는 아니 된다”고 규정하고 있고,

또한, 임직원행동강령규정시행세칙 제15조(금품 등의 수수 제한)에 “임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·부동산·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” 라고 규정하고 있음

아울러 상기 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시는 인사규정 제43조(징계)와

동 규정시행세칙 제56조(징계양정기준)에 의거하여 “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한다”고 규정하고 있음

또한, 임직원행동강령규정시행세칙 제36조(징계)에 “사장은 규정에 저촉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게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”고 규정하고 있음.

III. 처분계획(안)

□ 신분상 처분계획

- 취업규정 제10조(증여, 향응, 금전차용금지) 및 임직원행동강령규정 시행세칙 제15조(금품 등의 수수제한) 규정에 따라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·부동산·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
- △△△은 임직원행동강령규정 제8조(부당이득 수수금지) 및 동 규정시행세칙 제15조(금품 등의 수수제한)를 위반하였음.
다만, 직무와 관련한 위법·부당처분의 객관적 사례 및 거증여부가 불충족하여 인사규정 제43조(징계) 및 동 규정시행세칙 제56조(징계양정기준)에 따라 정직 처분을 요구하고자 함